

제 8 절 사회복지

- I.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 II. 복지시설 운영
- III. 노인 복지
- IV. 장애인복지
- V. 아동 복지
- VI. 의료 급여

I 國民基礎生活保障 受給者 管理

1.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가. 推進意義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고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나. 推進經過

- '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 하위법령 제정 및 주요기준 정비('99.10~2000. 4)
- 구 기초생활보장추진단 구성(2000. 5. 1)
- 소득.재산조사 (2000. 5~7월)
- 급여신청 접수 및 자산조사 실시(2000. 5~9월)
- 수급자 선정 및 각종급여 개시(2000.10. 1~)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실시(2003.1. 1~)

다. 主要內容

- 근로능력여부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수급권자 범위 확대 및 선정기준을 합리화하고
-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주거급여 신설,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에 대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급여종류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였다.

라. 2004 國民基礎生活保障 支援 實績

| 사업명 | | 지원대상 | 지원금액(천원) | 비고 |
|--------|----------|------------------|------------|--|
| 국고보조사업 | | | 13,425,368 | |
| 구분 | 생계보호 | 3,710가구 | 12,601,470 |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 | 교육보호 | 중.고생자녀 1,056명 | 823,898 | 입학금.수업료 |
| 시비보조사업 | | | 427,504 | |
| 구분 | 생계보조비 | 823가구 | 128,310 | 수급자 중 61-64세이하, 노인가구, 3-4급 장애인 가구, 모부자가정 |
| | 연료보조비 | 828가구 | 41,400 | |
| | 교통비.학용품비 | 중.고생자녀 977명 | 225,857 | 수급자 자녀 |
| | 의료비 | 61명 | 22,937 | |
| | 긴급구호비 | 39가구 | 9,000 | 저소득주민 |

마. 2005년 國民基礎生活保障事業

1) 소득인정액 기준 시행 : 2003. 1. 1

○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른 선정기준 변화

| 변경전(02년 까지) | | 변경후(03년부터) | |
|--------------------|-----------|----------------|-------------|
| -소득평가액 기준 | } ⇒ 소득평가액 | } ⇒ ① 소득인정액 기준 | |
| -재산기준 | | | |
| -금액기준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실물기준(주택, 농지, 승용차) | (실물기준 폐지) | ⇒ ②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의무자 기준 | | | |

○ 재산의 소득 환산율

| 구분 \ 종류별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
| 수급권자 | 4.17% | 6.26% | 100% |
| 부양 의무자 | 재산종류 구분없이 4.17% | | |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제5조)
 -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05(월/만원) | 40 | 67 | 91 | 114 | 130 | 148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7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text{재산} - \text{기초공제액} - \text{부채}) * \text{소득환산율}$$

$$\text{실제소득} - \text{가구특성별지출비용} - \text{근로소득공제}$$

<지 원 내 용>

| 구 분 | 내 용 |
|----------------|--|
| 생계급여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 |
| 주거급여 (현금급여) | ○ 자가가구 및 주택전체 무료임차가구등 주거급여 제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1-2인 가구 33원, 3-4인 가구 42천원, 5-6인 가구 55천원 차등지급) ○ 자가가구등은 주거현물급여를 위하여 30%공제한 금액을 지급 (1-2인 가구 23천원, 3-4인 가구 30천원, 5-6인 가구 39천원 차등 공제) |
| 주거급여 (현물급여) | ○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가구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 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현금액의 30%를 공제하고 3년에 1회이상 주택수선으로 급여 실시 |
| 교육급여 | ○ 수급자 중고등학생 자녀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비 (1인 년1회 10만원) 단, 2002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은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는 없고, 부교재는 29천원 지급 ○ 학용품비 : 연2회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1인당 4만원, 학기당 2만원씩 2회) |
| 해산급여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1명당 200천원(쌍둥이 10만원 추가) |
| 장제급여 |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의료1종 500천원, 의료2종 400천원 지급 |
| 의료급여 | 전수급자 의료1종 전액, 의료2종 80% 지원 |



<예 산 현 황>

(단위 : 천원)

| 계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비등) | 자 활 지 원 | | | |
|------------|--------------------|-----------|--------------|--------------|-------------|
| | | 계 | 자활근로 사업지원 | 지역봉사 사업 등 | 복권기금 사 업 |
| 15,312,182 | 14,033,866 | 1,278,316 | 1,077,469 | 10,847 | 190,000 |

○ 自活支援事業

2000.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뿐만 아니라 특례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였다.

<조건부 수급자 선정 및 조건제시>

가. 선정기준 : 18세이상 64세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도 판정기준)로서, 근로능력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비 지급이 가능하다.

나. 조건부 수급자 유형 구분 : 근로능력점수표에 의거 분류

| 구 분 | 내 용 |
|--------------------------|--|
| 취업대상자 (근로능력점수70점 이상) | 건강한 청·장년층으로서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 및 직업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편입이 가능한 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 취업등 의뢰 |
| 비취업대상자 (근로능력점수 70점미만) | 건강상태가 취업에 적합하지 않거나 직업경력이 일천한 청·장년층을 자활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근로기회 제공 |

다. 자활사업 제시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수급자 가구특성 및 자활욕구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자활방향을 모색키 위해 가구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조건부수급자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제시하여 수급자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라. 2005년 자활사업 내용

| 구분 | 사업명 | 사업명별 (주요사업 내용별) | 인원 | | | | | 예산 (백만원) | 비고 |
|---------------------|---------------------|-----------------------|------------|------------|-----------|-----------|-----------|--------------|----|
| | | | 소계 | 조건부 수급자 | 자활 특례자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 |
| 총 계 | | | 277 | 197 | 51 | | 29 | 1,278 | |
| 시·군·구 주관 프로그램 | 자활공동체 | 소계 | 13 | 7 | 1 | 0 | 5 | 0 | |
| | | 남광자활농장 | 2 | 2 | | | | 0 | |
| | | 남광꽃농원 | 3 | 3 | | | | 0 | |
| | | 남광도우미회 | 8 | 2 | 1 | | 5 | 0 | |
| | | 청결나라청소 | 5 | 1 | 4 | | | 18 | |
|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 소계 | 51 | 25 | 18 | | 8 | 392 | |
| | | 한울인테리어 | 10 | 4 | 4 | | 2 | 66 | |
| | | 차사랑세차 | 9 | 4 | 3 | | 2 | 85 | |
| | | 그린재활용사업단 | 10 | 7 | 1 | | 2 | 89 | |
| | | 한마음사업단 | 10 | 5 | 4 | | 1 | 92 | |
| |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 소계 | 74 | 40 | 19 | | 15 | 566 | |
| | | 금정사랑나눔미 | 20 | 10 | 8 | | 2 | 135 | |
| | | 갈끄미이불빨래방 | 10 | 6 | 3 | | 1 | 90 | |
| | | 결식아동도시락배달 | 10 | 7 | 1 | | 2 | 60 | |
| | | 복지도우미 | 8 | 2 | | | 6 | 84 | |
| | | 자활도우미 | 1 | | | | 1 | 7 | |
| | | 방문도우미 | 25 | 15 | 5 | | 5 | 190 | 기금 |
| | 보육도우미 | 7 | 4 | 2 | | 1 | 42 | | |
|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 소계 | 56 | 44 | 12 | | | 281 | |
| | | 공동자립장사업 | 8 | 6 | 2 | | | 53 | |
| | | 환경정비사업 | 4 | 3 | 1 | | | 25 | |
| | | 복지시설도우미 | 44 | 35 | 9 | | | 203 | |
| | 인턴형 | 인턴형 자활근로 | 3 | 1 | 1 | | 1 | 17 | |
| | 지역봉사 | 시설봉사 | 33 | 33 | | | | 19 | |
| | 재활프로그램 | 재활치료 | 17 | 17 | | | | 3 | |
| | 기타 | | | | | | | 0 | |
| |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소계 | 30 | 30 | | | | 0 |
| 취업알선 | | | 11 | 11 | | | | 0 | |
| 자활직업훈련 | | | 11 | 11 | | | | 0 | |
| 직업적응훈련 | | | 4 | 4 | | | | 0 | |
| 창업지원 | | | 2 | 2 | | | | 0 | |
|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 | | 2 | 2 | | | | 0 | |

2. 2004년 저소득 주민 보호 실적

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등 용자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 및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타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생업자금을 용자해 주고 있다.

(단위 : 천원)

| 계 | | 생활안정자금 | | 전 세 자 금 | | 생 업 자 금 |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69 | 408,800 | 25 | 25,000 | 31 | 366,500 | 9 | 123,000 |

나.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귀순북한동포, 철거세입자,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해 점수를 산정하여 지구별 예비입주자를 관리주체(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의 정기 또는 추가 입주자 선정요청시 통보하고 있다.

<지 구 별 예 비 입 주 자 추 천 현 황>

(단위 : 세대)

| 지구별 년도별 | 계 | 부곡 | 덕천 | 반송 | 모라 | 학장 | 동삼 | 개금 | 금곡 | 다대 |
|------------|-----|-----|----|-----|----|----|----|----|-----|----|
| 1996년 | 177 | | 58 | 55 | 11 | | 4 | 1 | 33 | 15 |
| 1997년 | 80 | 6 | 13 | 35 | 2 | | 6 | 1 | 11 | 6 |
| 1998년 | 64 | 5 | 7 | 35 | 3 | | 1 | | 7 | 6 |
| 1999년 | 68 | 12 | 12 | 15 | 12 | | 2 | | 11 | 4 |
| 2000년 | 255 | 85 | 45 | 67 | 10 | 1 | 6 | 1 | 20 | 20 |
| 2001년 | 496 | 187 | 79 | 66 | 16 | 2 | 19 | 26 | 87 | 14 |
| 2002년 | 338 | 81 | 12 | 128 | 3 | 1 | 22 | 10 | 57 | 24 |
| 2003년 | 340 | 82 | 12 | 111 | 23 | 1 | 20 | 10 | 59 | 22 |
| 2004년 | 458 | 158 | 30 | 92 | 21 | 1 | 13 | 9 | 113 | 21 |

다. 장학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려운 세대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실적은 다음과 같다.

<장학금 지급 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 지급회수 | 중 학 생 | | 고등학생 | |
|-------|-----|--------|------|-------|--------|------|--------|
| | 인 원 | 금 액 |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 97년 | 123 | 46,300 | 1회 | 53 | 16,900 | 70 | 29,400 |
| 98년 | 124 | 36,400 | 1회 | 54 | 14,000 | 70 | 22,400 |
| 99년 | 117 | 30,000 | 1회 | 51 | 10,200 | 66 | 19,800 |
| 2000년 | 90 | 30,000 | 1회 | 40 | 10,000 | 50 | 20,000 |
| 2001년 | 80 | 20,000 | 1회 | 40 | 8,000 | 40 | 12,000 |
| 2002년 | 60 | 15,000 | 1회 | 30 | 6,000 | 30 | 9,000 |
| 2003년 | 60 | 15,000 | 1회 | 30 | 6,000 | 30 | 9,000 |
| 2004년 | 60 | 15,000 | 1회 | 30 | 6,000 | 30 | 9,000 |

라.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분야별(한방·양방 진료, 이·미용, 가전제품수리, 취업상담, 시력검진 및 돌보기 지급) 자원봉사자(30~40명)로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을 구성, 2000년부터 운영해온 순회봉사단을 2005년도에도 복지관, 교회, 성당 등의 장소에서 관내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밀착 봉사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II 福祉施設 運營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안내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현황

| 시 설 명 | 위 치 | 부 지 | 건 물 | 운영주체 |
|------------------|-----------------|---------|------------------------------|-------------------|
| 금 정 구 종합사회복지관 | 금사동 545-22번지 | 4,150㎡ | 1동 2,648.66㎡ (지하1층, 지상4층) | 사회복지법인 범 어 사 |
| 남 광 종합사회복지관 | 노포동 산15 | 43,446㎡ | 2동 1009.67㎡ (지상2층) | 사회복지법인 남광사회복지회 |

나. 주요 사업내용

- 가정복지
가족상담, 아동·청소년 학습지도, 장애아동 특수치료 등
- 지역사회보호사업
노인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물리치료, 무료급식, 건강상담 및 관리, 방문가사 서비스, 후원금품 지원 등
- 지역사회조직사업
후원자 발굴, 자원봉사자 양성, 시설 대여, 욕구조사, 복지관련 정보제공 등
- 교육·문화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기능교실 운영, 꽃꽂이, 서예 등 교양강좌, 노인대학, 청소년 농구대회 등
- 자활사업
봉제, 이미용, 조리 등 직업훈련, 고령 자취업지도, 가사도우미 알선 등

2.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7개소(양로원3, 요양원2, 치매요양원2)에 602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5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단기보호사업, 주간보호사업을 전개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수용자 관리 및 시설지도 점검을 년4회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의 복지시설운영을 유도하고 시설 현대화에 따른 기능보강사업 등이 지원되어 왔으며, 2004년에는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7개소에 5,677,208천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564,580천원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였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 구 분 | 시 설 명 | 시 설 장 | 소 재 지 | 정/현원 |
|-----------|-------|-------|-------------|-------------------------------------|
| 주거의료복지시설 | 7 개 | | | 716/602 |
| 양 로 원 | 신 망 애 | 한 대 영 | 장전2동 502-13 | 130/78 |
| | 동 래 | 임 영 호 | 장전2동 산38-25 | 100/102 |
| | 애 광 | 이 지 연 | 장전2동 503-77 | 121/76 |
| 요 양 원 | 애 광 | 노 갑 연 | 장전2동 503-78 | 75/68 |
| | 동 래 | 장 병 원 | 장전2동 산38-25 | 70/65 |
| 치매전문요양원 | 애광치매 | 유 희 자 | 장전2동 503-77 | 130/126 |
| | 신망애치매 | 박 선 자 | 장전2동 502-24 | 90/87 |
| 재가복지시설 | 5 개 | | | |
| 재가노인복지관 | 애 광 | 노 갑 연 | 장전2동 503-78 | ① 가정봉사원파견 사업 ② 주간보호 ③ 단기보호 |
| | 남 광 | 박 서 춘 | 노포동 산15 | ① 가정봉사원파견 사업 ② 주간보호 ③ 단기보호 |
| 복지관부설재가복지 | 금 정 구 | 양 효 정 | 금사동 545-22 | ① 가정봉사원파견 사업 ② 실비주간보호 |
| 단기보호센터 | 규 립 | 서 유 미 | 장전2동 502-25 | 단기보호 |
| 주간보호센터 | 동 부 | 류 동 극 | 서4동 186-2 | 주간보호 |



Ⅲ 老人福祉

우리구 노인 인구는 2004년 12월 현재 21,075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심각해져 가는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금정구지회 운영과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후생활이 보람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05년도에도 사회 보장적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할 계획이다.

<시책추진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2004년 실적 | | 2005년 계획 | |
|--------------|----------|-----------|----------|-----------|
| | 물 량 | 금 액 | 물 량 | 금 액 |
| 계 | 118,317 | 3,837,812 | 124,635 | 4,090,832 |
| 노인 건강 진단 (명) | 747 | 9,442 | 800 | 8,595 |
| 경로당 운영비(개소) | 112 | 175,440 | 112 | 194,880 |
| 금정지회 운영(개소) | 1 | 10,000 | 1 | 10,000 |
| 노인 교통 수당 (명) | 84,299 | 2,046,859 | 89,164 | 2,246,952 |
| 경로연금(명) | 31,111 | 1,346,893 | 32,000 | 1,376,497 |
| 경로당 보수비 (개소) | 10 | 10,000 | 10 | 10,000 |
| 경로식당운영비(개소) | 6 | 102,928 | 6 | 98,208 |
| 노인교실운영비(개소) | 6 | 12,600 | 6 | 14,400 |
| 영세치매노인보호비(명) | 24 | 3,650 | 40 | 6,500 |
| 무의탁노인생계비(명) | 2,001 | 120,000 | 2,496 | 124,800 |

※ 노인협동농장 운영

소일거리가 없어 경로당에서 장기, 바둑등으로 하루를 보내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노포동 651번지 400평의 휴경지를 활용하여 경로당별 주1회정도 교대로 물주기, 풀뽑기 등 작물을 재배하는 「경로당 노인 협동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20개소의 경로당에 130여명의 노인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여기서 나오는 수확물(상추, 쪽갓, 무)은 참여노인과 불우이웃에게 제공하고 있다.

IV 障 碍 人 福 祉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12월 31일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며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등록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각종 시혜를 받고 있으며, 미등록 장애인에 대하여는 계속 홍보하고 있다.

<장 애 인 등 록 현 황>

| 등급\유형 | 계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언어 | 정신지체 | 자폐증 | 정신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요루 | 간질 |
|-------|-------|-------|-----|-----|-------|------|-----|-----|-----|----|-----|----|----|-------|----|
| 계 | 7,329 | 3,787 | 796 | 845 | 568 | 505 | 41 | 304 | 230 | 94 | 49 | 30 | 6 | 31 | 43 |
| 1 급 | 694 | 144 | 206 | 124 | 5 | 129 | 18 | 42 | 4 | 8 | 7 | 7 | - | - | - |
| 2 급 | 1,431 | 336 | 247 | 31 | 181 | 221 | 18 | 178 | 171 | 17 | 13 | 9 | - | - | 9 |
| 3 급 | 1,374 | 666 | 203 | 40 | 99 | 155 | 5 | 84 | - | 69 | 29 | 9 | 2 | 1 | 12 |
| 4 급 | 996 | 736 | 75 | 35 | 114 | | | | - | - | - | - | 4 | 10 | 22 |
| 5 급 | 1,221 | 960 | 37 | 57 | 87 | | | | 55 | - | - | 5 | - | 20 | - |
| 6 급 | 1,613 | 945 | 28 | 558 | 82 | | | | - | - | - | - | - | - | - |

2. 장애인 복지사업 현황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 복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 원 사 업 현 황>

(단위: 천원)

| 구 분 | 2004년 실적 | | 2005년 계획 | |
|----------|----------|---------|----------|---------|
| | 인 원 | 예 산 액 | 인 원 | 예 산 액 |
| 재활보조기구 | 65명 | 4,788 | 70명 | 5,690 |
| 생계보조수당 | 998 | 495,754 | 1,088명 | 693,000 |
| 의료비 지원 | 720명 | 104,000 | 945명 | 72,500 |
| 자녀 교육비 | 138명 | 22,000 | 134명 | 20,000 |
| 장애아동부양수당 | 214명 | 7,500 | 228명 | 8,694 |
| 자립자금대여 | 3명 | 30,000 | 3명 | 30,000 |

V 兒童福祉

1. 건전 보육사업

기혼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보육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아동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립등 지원 보육시설 현황〉

| 구 분 | 보육아동수 | 운영주체 | 소 재 지 |
|-----------------|-------|--------|-------|
| 구 서 어 린 이 집 | 95 | 공 립 | 구서2동 |
| 금 성 어 린 이 집 | 81 | 공 립 | 금성동 |
| 부 곡 복 지 어 린 이 집 | 118 | 공 립 | 부곡1동 |
| 부 산 대 부 설 | 195 | 국 립 | 장전2동 |
| 부 곡 어 린 이 집 | 120 | 법 인 | 부곡2동 |
| 마 야 어 린 이 집 | 118 | 법 인 | 금사동 |
| 동 성 어 린 이 집 | 89 | 법 인 | 구서2동 |
| 선 재 어 린 이 집 | 60 | 법 인 | 구서2동 |
| 서 동 어 린 이 집 | 39 | 영아전담시설 | 서 4동 |
| 행 복 한 어 린 이 집 | 40 | 영아전담시설 | 구서1동 |
| 동 심 어 린 이 집 | 39 | 영아전담시설 | 청 룡 |
| 큰 바 다 어 린 이 집 | 49 | 법 인 | 구서1동 |
| 석 화 어 린 이 집 | 39 | 법 인 | 남산동 |
| 부곡영아전담 어 린 이 집 | 56 | 법 인 | 부곡2동 |
| 해 무 리 어 린 이 집 | 44 | 법 인 | 서 3동 |

〈보 육 시 설〉

| 지 역 별 | 시 설 수 | 입소아동수 | 보육시설현황 |
|-----------|-------|--------|--|
| 계 | 120개소 | 4,255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 공 립 : 4 개소 • 법 인 : 8 개소 • 민간보육시설 : 73개소 • 가정보육시설 : 35개소 |
| 서 동 지 역 | 31 개소 | 928명 | |
| 부 곡 동 지 역 | 23 개소 | 848명 | |
| 장 전 동 지 역 | 20 개소 | 1,246명 | |
| 구 서 동 지 역 | 46 개소 | 1,233명 | |

2. 어린이놀이터 관리

어린이들과 지역주민의 건전한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인 어린이 놀이터를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년2회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수시로 이용불편사항을 점검·정비하고 있으며, 놀이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및 자원봉사단체와 결연·관리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동별 어린이 놀이터 현황〉 (9개동 20개소)

| 계 | 서3동 | 금사동 | 부곡3동 | 장전동 | 선두구 | 청룡노포 | 구서1동 | 구서2동 | 남산동 |
|----|-----|-----|------|-----|-----|------|------|------|-----|
| 20 | 2 | 4 | 1 | 1 | 3 | 4 | 1 | 2 | 2 |

3.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아동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응능력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보호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하여 가정위탁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의 자립 성장시까지 후견인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시설현황

| 구분 | 시설명 | 시설장 | 소재지 | 정/현원 |
|----------|---------|-----|-------------|--------|
| 양육 시설 | 희락원 | 박효일 | 청룡노포동 964-1 | 100/63 |
| | 남광아동복지원 | 하정옥 | 청룡노포동 산15 | 95/69 |
| | 성애원 | 최송엽 | 장전2동 산38-12 | 98/72 |
| | 동성원 | 손옥희 | 구서2동 175-3 | 85/78 |
| 장애 | 선아원 | 임경실 | 장전2동 산38-6 | 76/65 |

나. 시설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수학여행비 및 도시락 반찬비 등을 지원하며, 보호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퇴소 전 실업계 고교 입학 및 한독 부산직업전문학교 입학을 유도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으로 주 2회 이상 학업지도를 하고 있으며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아동들의 자립에 힘쓰고 있다.

4. 모·부자 가정보호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모·부자세대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모·부자세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계층으로서 생계 곤란, 자녀교육 등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실정으로,

모·부자가정중 요보호세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립 기반조성, 자녀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 자립지원금 지원, 아동양육비 및 학비지원, 교통비등 모·부자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2004년 모·부자가정 현황 >

(가구수/가구원수)

| 구 분 | 계 | 모·부자복지법 대상 |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보훈 |
|------|-----------|------------|---------|------|-----|---------------|------|
| | | 소계 | 재가보호 | 시설보호 | 미보호 | | |
| 모자가정 | 658/1,721 | 212/522 | 212/522 | | | 446/1,199 | |
| 부자가정 | 143/379 | 49/132 | 49/132 | | | 94/247 | |

VI 醫 療 給 與

1. 의료급여 제도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의 료 급 여 수 급 권 자>

| 종 별 | 대 상 |
|-----|---|
| 1 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자로 구성된 세대,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및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
| 2 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자로 구성된 세대 |

<의 료 급 여 현 황>

| 동명 | 종별 | | 1 종 | | 2 종 | | 국가유공자 | | 시 설 | |
|--------|-------|-------|-------|-------|-----|------|----------|-----|-----|--|
| | 세대수 | 세대원수 | 세대수 | 세대원수 | 세대수 | 세대원수 | 시 설 명 | 세대수 | | |
| 소 계 | 2,570 | 3,514 | 1,505 | 3,973 | 204 | 492 | 12 | 932 | | |
| 서 1 동 | 228 | 332 | 135 | 367 | 13 | 27 | 성애원 | 72 | | |
| 서 2 동 | 152 | 202 | 102 | 282 | 19 | 37 | 동성원 | 78 | | |
| 서 3 동 | 77 | 97 | 59 | 151 | 2 | 5 | 남광원 | 69 | | |
| 서 4 동 | 106 | 150 | 75 | 206 | 10 | 27 | 희락원 | 63 | | |
| 금 사 동 | 208 | 309 | 79 | 201 | 7 | 13 | 신망애양로원 | 75 | | |
| 부곡 1 동 | 260 | 380 | 210 | 579 | 22 | 61 | 애광양로원 | 75 | | |
| 부곡 2 동 | 116 | 140 | 96 | 266 | 11 | 27 | 동래양로원 | 97 | | |
| 부곡 3 동 | 128 | 156 | 73 | 186 | 9 | 27 | 선아원 | 63 | | |
| 부곡 4 동 | 191 | 261 | 94 | 240 | 14 | 32 | 동래요양원 | 65 | | |
| 장전 1 동 | 131 | 168 | 88 | 227 | 12 | 39 | 애광치매요양원 | 125 | | |
| 장전 2 동 | 140 | 168 | 100 | 236 | 9 | 17 | 애광요양원 | 68 | | |
| 장전 3 동 | 119 | 154 | 62 | 154 | 8 | 25 | 신망애치매요양원 | 82 | | |
| 선두구동 | 102 | 137 | 26 | 71 | 5 | 8 | | | | |
| 청룡노포 | 105 | 138 | 32 | 76 | 6 | 15 | | | | |
| 남 산 동 | 275 | 394 | 129 | 355 | 23 | 44 | | | | |
| 구서 1 동 | 125 | 183 | 68 | 186 | 18 | 43 | | | | |
| 구서 2 동 | 86 | 119 | 69 | 172 | 14 | 39 | | | | |
| 금 성 동 | 21 | 26 | 8 | 18 | 2 | 6 | | | | |

나. 의료급여의 내용

수급권자의 진찰,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 재료, 의료급여기관에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는다.

【급여의 범위에 제외되는 경우】

-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2) 특진 보조기, 의치, 의한,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등
- (3)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제3자의 고의, 과실 행위로 인한 진료
- (4) 자동차 손해보상보험법, 민법 등에 의하여 가해자가 진료보상이 가능한 경우

<본인 부담율>

| 구 분 | 외 래 | 입 원 |
|-----|---|---|
| 1 종 | 전액기금 부담 | 전액기금 부담 (식대제외) |
| 2 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의료급여기관 방문당 1,000원 본인부담, 나머지는 기금부담 ◦2,3차 진료기관 기금부담 85%,본인부담15% ◦약국 : 방문당 500원 본인부담, 나머지는 기금부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부담 85%, 본인부담 15% |

2.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 지원

의료급여법 제20조 (급여비용의 대불) 시행규칙 제27조(급여비용의 대불신청 및 상환방법 등)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2종) 입원시 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본인신청에 의해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하며 3 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신청은 신청서(구청비치)에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대불금액별 분할상환기간은 아래와 같다.

<대불금액별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

| 대 불 금 액 | 10만원 미만 | 10만원이상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
|---------|---------|---------------|---------|
| 횟 수 | 3 회 | 8 회 | 12 회 |